

☑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하지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작성하고 서명인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유발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인일 거짓 또는 무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유지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경우별 기재사항 변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이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따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의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장은 어떤내용을 요약 발표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품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해지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형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청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증대하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배당

· 이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민제 등 범접시 문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보험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인터넷 www.nhire.co.kr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에 문의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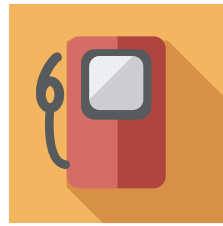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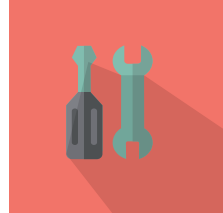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위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당사 고객센터 ☎1644-9000

무배당

내사업 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1404

회재부터 손님상해까지 업종별 다양한 배상위험을 한번에 보장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 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음식점 A 플랜 [건물금수 1억, 상해금 1억, 40세 남자, 도시사, 건물화재 미가입, 월납 10만원기준]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공시이율(3.7%)		표준이율(3.5%)		최저보장이율(1.5%)	
		해약환급금	환급율	해약환급금	환급율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1,200,000	34,700	2.90%	33,900	2.83%	25,400	2.12%
3년	3,600,000	1,999,500	55.54%	1,991,900	55.33%	1,916,600	53.24%
5년	6,000,000	4,096,000	68.27%	4,074,100	67.90%	3,860,600	64.34%
7년	8,400,000	6,329,800	75.36%	6,285,000	74.82%	5,854,000	69.69%
10년	12,000,000	10,015,300	83.46%	9,915,900	82.63%	8,980,500	74.84%
15년	18,000,000	17,122,200	95.12%	16,862,700	93.68%	14,508,000	80.60%

주) 상기 예시 만기환급금(2014년 4월 1일 현재)은 적립부분 손보험료(적립부분 영연영명보)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상기 헤아림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차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금액은 백원 미만 절사

화재부터 손님 상해까지

무배당 내사업 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¹⁴⁰⁴가 보상해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벌금보장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불을 낸 사람이 실화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에 의한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배당 내사업 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¹⁴⁰⁴는 새 내사업 화재로 인한 벌금까지도 보상해드립니다(가입금액 한도 내, 해당특약 가입시).

화재보상 및 업종별 다양한 배상책임

음식점, 찜질방, 이마요실, IT집합건물 등 업종이 달라지면 보장도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각 업종 특성에 맞춰 알맞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상해, 재물, 배상책임, 의료비를 한번에

사업주 또는 종업원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에도 무배당 내사업 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¹⁴⁰⁴가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단, 종업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에 한함, 해당특약 가입시).

가입안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대상	환급률
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건물주 또는 세입자	보장성 보험 (환급률 100% 이하)

주) 단,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2) 단,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해당 목적물의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 가입대상자

음식점, 다방, 제과점, 스낵코너, 주점, 휴게실 등을 운영하는 점포 경영주

▶ 가입 예시

담보명		A 플랜(100㎡)	B 플랜(165㎡)
화재손해(시설/집기)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구내 폭발·파열손해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구내 강도손해		-	10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인당	5백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대인	8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대물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1사고당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1인당	1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	1인당(대인)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1사고당(대인)	무한 한도	무한 한도
	1사고당(대물)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일반상해시상 후유장애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일반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

주) 건물주인 경우 건물화재, 임차자인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구분	월납 보험료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A	10만원	79.09%	74.81%	86.59%	77.55%	95.12%	80.60%
B	20만원	79.55%	75.24%	87.06%	77.96%	95.57%	80.98%

주1) 건물급수 1급, 상해 1급 40세 남자, 도시가스, 자상, 건물화재 미가입

주2)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2014년 4월 1일 현재)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2014년 4월 현재 3.7%) 및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차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국



▶ 가입대상자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약사 또는 한약사

▶ 가입 예시

담보명		A 플랜(100㎡)	B 플랜(165㎡)
화재손해	시설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의약품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구내 강도손해		-	100만원
약국시설 배상책임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1인당	5백만원 한도	
의약품 등 배상책임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인당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	1인당(대인)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1사고당(대인)	무한 한도	무한 한도
	1사고당(대물)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일반상해시망 후유장해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일반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

주1) 건물주의 경우 건물화재, 임차자의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2) 의약품 등 배상책임은 약사 1인 기준이며,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 부과하여 가입가능

주3) 화재배상책임은 약국시설배상책임과 비례보상합니다.

▶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구분	월납 보험료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A	8만원	82.24%	77.78%	90.03%	80.62%	98.89%	83.79%
B	15만원	81.98%	77.54%	89.69%	80.32%	98.42%	83.39%

주1) 건물금수 1급, 상해 1급 40세 남자, 건물화재 미가입, 의약품 등 배상책임은 약사 2인 이내 기준

주2) 상기 예시 만기환급률(2014년 4월 1일 현재)은 적립부분 손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2014년 4월 현재 3.7%) 및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산입일차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



▶ 가입대상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영주

▶ 가입 예시

담보명		A 플랜(100㎡)	B 플랜(165㎡)
화재손해	건물/시설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재고자산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구내 폭발·파열손해		1억3천만원 한도	3억5천만원 한도
구내 강도손해		-	100만원
주유소배상책임(자기부담금 50만원)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화재배상책임	1인당(대인)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1사고당(대인)	무한 한도	무한 한도
	1사고당(대물)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일반상해시망 후유장해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일반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

주1) 주유소 연간 매출액 400억 이하 가입가능(연간 매출액 25억 초과 30억 이하 적용)

주2) 화재배상책임은 주유소배상책임과 비례보상합니다.

▶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구분	월납 보험료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A	20만원	64.61%	61.11%	70.70%	63.31%	77.62%	65.77%
B	50만원	76.33%	72.19%	83.58%	74.85%	91.81%	77.79%

주1) 건물금수 1급, 상해 1급 40세 남자, 건물화재 미가입

주2) 지하저유탱크있는 가솔린판매소, 연간매출액 3억 초과 5억 이하

주3) 상기 예시 만기환급률(2014년 4월 1일 현재)은 적립부분 손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2014년 4월 현재 3.7%) 및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산입일차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및 놀이방 등



▶ 가입대상자

유치원, 놀이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원장 또는 학교장

▶ 가입 예시

담보명		A 플랜(100㎡)	B 플랜(165㎡)
화재손해(시설/집기)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구내 폭발·파열손해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음식물 배상책임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인당	5백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	1인당(대인)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1사고당(대인)	무한 한도	무한 한도
	1사고당(대물)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일반상해시상 후유장해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일반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

주) 건물주인 경우 건물화재, 임차자인 경우 임차자배상책임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구분	월납 보험료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A	10만원	75.50%	71.40%	82.60%	73.97%	90.74%	76.89%
B	20만원	73.58%	69.59%	80.47%	72.06%	88.32%	74.84%

주1) 건물 1급, 원장 또는 학교장 상해 1급, 40세 남자 기준, 건물화재 미가입

주2) 원상수 : A플랜(50명), B플랜(100명) 5세 기준(유치원)

주3)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2014년 4월 1일 현재)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2014년 4월 현재 3.7%) 및 최저보증이율(15%)로 무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편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장 및 그 밖의 점포



▶ 가입대상자

공장 및 사무실, 판매시설, 숙박업, 이·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점포 경영주

▶ 가입 예시

담보명		A 플랜(100㎡)	B 플랜(165㎡)
화재손해(시설/집기)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구내 폭발·파열손해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화재배상책임	1인당(대인)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1사고당(대인)	무한 한도	무한 한도
	1사고당(대물)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일반상해시상 후유장해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일반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

주) 건물주인 경우 건물화재, 임차자인 경우 임차자배상책임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구분	월납 보험료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
A	10만원	78.59%	74.33%	86.03%	77.04%	94.49%	80.06%
B	20만원	78.11%	73.87%	85.45%	76.52%	93.79%	79.47%

주1) 건물급수 1급, 상해 1급 40세 남자, 건물화재 미가입

주2) 업종코드 : 석탄·광업

주3) 상기 예상 만기환급률(2014년 4월 1일 현재)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2014년 4월 현재 3.7%) 및 최저보증이율(15%)로 무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편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장별 세부항목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보험가액 대비 비례) ※ 잔존물제거 비용 포함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보험금: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비례보상
만기환급금	보험료 완납후 만기 시	적립금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도난손해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구내 강도손해	보험목적이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겼으므로 입은 손해 보상	가입금액
전기위험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가입금액 한도
구내 냉동(냉장)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번조로 인한 온도 변화로 보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구내폭발·파열손해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손해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액 대비 비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외 비수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 →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택계약 추가	가입금액 한도
붕괴, 침강 및 사태 재산손해 (보험가액 대비 비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 (보험가액 대비 비례)	가입금액 한도
화재 배상책임	피보험자(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 본인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임차자 (화재)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수 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해야 할 손해 → 건물소유자의 중립배상책임 부보성 추가	1인당 사망 8천만원 / 부상 1,500만원 / 후유장애 8천만원 한도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화재배상 제외)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A형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B형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한도		
		C형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한도		
		D형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1인당 8천만원한도 • 대물: 가입금액 한도			
음식물 배상책임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 시(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지급금액 구분(인명/1사고당 보상한도 임)	A형	5백만원/1천만원 한도		
		B형	5백만원/3천만원 한도		
		C형	1천만원/3천만원 한도		
		D형	5백만원/5천만원 한도		
		E형	1천만원/5천만원 한도		
		F형	1천만원/1억원 한도		
의약품등 배상책임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애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자기부담금 10만원) ※지급금액 구분(인명/1사고당 보상한도 임)	A형	5백만원/5백만원		
		B형	5백만원/1천만원		
		C형	1천만원/2천만원		
		D형	1천만원/5천만원		
		E형	2천만원/1억원		
		약국시설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약국)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 시 (1사고당 자기 부담금 10만원)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A형	3천만원				
	B형			5천만원	
				C형	1억원
주유소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학교)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 시(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A형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B형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한도
		대인 A형	1천만원/1억원		
			대인 B형	3천만원/3억원	
주차장 배상책임	주차장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인/대물 각각 30만원) ※지급금액 구분	대인 C형	5천만원/5억원		
		대물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장별 세부항목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단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가입보험료 지급)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징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추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이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이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추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단, 입원당 180일 한도)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중업원상해 사망·후유장해	경영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가입보험료 지급)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징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 지급률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사망	업무 중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운전자 (자가용)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포함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해금수 지급금액 1급 600만원 2~4급 30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비운전자	비운전자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보험계약 포함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상해금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말함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점포휴업손해	화재, 배락,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생긴 손해보상(실제휴업일수등인의 매출이익 손실보상)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2,000만원 한도)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외래	상해사고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처방 조제	상해사고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질병 입원	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365일한도)
	처방 조제	질병으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질병 통원	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처방 조제	질병으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해 입원	외래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90%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365일한도)
	처방 조제	상해사고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을 차감한 금액	
질병 입원	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365일한도)
	처방 조제	질병으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을 차감한 금액	
질병 통원	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가입금액 한도
	처방 조제	질병으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을 차감한 금액	

▶ 일반 (해상(상) 프비) 프비(상)

▶ 선 (해상(상) 프비) 프비(상)

구분	의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	1만원	1.5만원	2만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	1만원	1.5만원	2만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	1만원	1.5만원	2만원